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

1.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의 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<http://www.eum.go.kr>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☎ 051-888-4234) 및 수영구 건축과(☎ 051-610-466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6년 7월 29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

지정 구분	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규	재개발사업	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	38,171.2	

2. 재개발사업 정비계획

○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	계	38,171.2	100.0	
	제3종일반주거지역	38,171.2	100.0	제2종 → 제3종
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(도시계획시설)	계	38,171.2	100.0	
	택 지	29,746.0	77.9	
	공동주택용지	29,746.0	77.9	
	정비기반시설 (도시계획시설)	8,425.2	22.1	
	주 차 장	1,356.0	3.6	
	도 로	7,069.2	18.5	

○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총 계		38,171.2	-	38,171.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8,171.2	감) 38,171.2	-	-	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8,171.2	38,171.2	100.0	

■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-	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38,171.2	•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변경

○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분담금 추산액	총수입 추산액	총사업비 추산액	중전자산합계 추산액	추정 비례율
	482,329,190,000	338,090,210,000	131,499,904,000	109.97%
산출근거	•중전자산합계 추산액 = 토지등소유자별 중전자산 추산액 합계 •추정 비례율 = (총수입 추산액 - 총사업비 추산액)/중전자산합계 추산액 •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= 조합원분양가 - 권리가액			

※ 상기 중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(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)

○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계획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372	20	집산도로	138	수영동 496-9	수영동 498-9	일반도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
변경	중로	1	372	20	집산도로	201	수영동 496-9	수영동 498-7	일반도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노선연장
신설	중로	1	34	20	집산도로	102	수영동 483-13	수영동 482-13	일반도로	-	-	
기정	중로	2	551	15~18	국지도로	590	수영동 494-10	망미동 208-1	일반도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
변경	중로	2	551	15~23	국지도로	587	수영동 494-10	망미동 208-1	일반도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노선확폭 및 축소

신설	중로	2	557	15	국지도로	76	망미동 250-13	망미동 250-10	일반도로	-	-	
신설	소로	1	30	10~11	국지도로	552	수영동 500-4	수영동 477-5	일반도로	-	-	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372호선	중로1-372호선	•노선 연장 - B= 20m - L= 138m → 201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차량통행의 개선을 위해 기 결정된 노선을 연장
-	중로1-34호선	•노선 신설 - B= 20m - L= 102m	•중로1-374호선과 연계한 도로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 신설
중로2-551호선	중로2-551호선	•노선 확폭 및 노선 축소 - B= 15~18m → 15~23m - L= 590m → 587m	•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선 확폭 및 노선 축소
-	중로2-557호선	•노선 신설 - B= 15m - L= 76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위해 노선 신설
-	소로1-30호선	•노선 신설 - B= 10~11m - L= 552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위해 노선 신설

2)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주차장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-	증) 1,356.0	1,356.0	-	

■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-	주차장	•신설 - A=1,356.0㎡	•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

○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 분	계 획	비 고
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	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「주택법」및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	

○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합 계		38,171.2	-	38,171.2	-	205	-	-	205	-	
신설	수영2 재개발 사 업 비 구	38,171.2	I -1	15,270.0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99	-	-	99	-	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
			II -1	14,476.0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96			96		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
			-	1,356.0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10	-	-	10	-	주차장
			-	7,069.2	-	-	-	-	-	-	도로

○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획지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												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												
신설	수영2 재개발사 업 정비구역	38,171.2	I - 1	15,270.0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% 이하	282% 이하	92m 이하													
			II - 1	14,476.0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% 이하	257% 이하	92m 이하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		•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%이상을 85㎡이하로 건설																				
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		•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%이상 임대주택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의 7%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•임대주택 세대수의 30%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%이상 → 40㎡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																				
용적률 완화기준 적용		※ 「2030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, 2019.12.」상 기준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•기준용적률 : 240% (주거정비구역) 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평가기준 점수</td><td>⇒</td><td>평가기준배점</td><td>토지이용</td><td>기준용적률</td></tr><tr><td>수영2구역</td><td>66점</td><td></td><td>50~80점 미만</td><td>주거정비</td><td>240%</td></tr></table> •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: 36.0% 1) 공공시설부지제공 인센티브 : 20.0%(최대 20% 적용) → 1.5×(3,620.2㎡÷29,746.0㎡)×200% = 36.5% 2)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: 5% → 5% (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 50% 이상) 3)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인센티브 : 5% 4)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센티브 : 6% •허용용적률 산정 - 허용용적률 : 240% + 20% + 5% + 5% + 6% = 276% •계획용적률 : 270% 이하(공동주택용지(I-1, II-1)의 전체 용적률은 270% 이하)									구 분	평가기준 점수	⇒	평가기준배점	토지이용	기준용적률	수영2구역	66점		50~80점 미만	주거정비	240%
구 분	평가기준 점수	⇒	평가기준배점	토지이용	기준용적률																	
수영2구역	66점		50~80점 미만	주거정비	240%																	

○ 정비구역 결합·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

구분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시행구역 결합·분할계획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㎡)		
합 계		38,171.2	-	-	38,171.2	결합·분할없음	
신설	I	15,270.0	1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15,270.0	-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II	14,476.0	1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14,476.0	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-	1,356.0	-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1,356.0	-	주차장
	-	7,069.2	-	-	7,069.2	-	도로

○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	비 고
환 경 보 전 계 획	•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, 토공사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·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•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, 포장 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•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,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•저소음,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	환경 보전 계획 반영
재 난 방 지 계 획	•사업시행 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•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,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, 가배수로,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,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,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•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•대상지는 부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이고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-19호)로 지정되어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방지 계획에 반영	재난 방지 계획 반영

○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구분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 고
교육환경 보호 계획	•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•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(소음진동먼지 등)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•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• 해당 관한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계획	

○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

- 대상구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-19호)와 연결해 있어 공사 시 침수 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방지 계획에 반영

○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- 사업대상지내 기존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700세대로, 계획세대수 대부분 국민 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로 계획하여 정비구역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계획
 - 또한, 정비구역 주변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,
 -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

○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「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30조에 따름

○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

구 분	계 획	비 고
사업 시행전	•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, 순찰초소 설치 요청 •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,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행	
사업 시행시	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시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,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(식재, 울타리, 표지 등)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등의 설치를 고려함	
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신설	합계	38,171.2	-	-	38,171.2	
	I	15,270.0	1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15,270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II	14,476.0	1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14,476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-	1,356.0	-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1,356.0	주차장
	-	7,069.2	-	-	7,069.2	도로

○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	비 고
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	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, 공사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,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	

○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	비 고
동물 보호에 관한 계획	•「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2조 규정에 의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시 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 동물보호 및 구제활동 시행	

○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

구 분	계 획	비 고
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	•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
정비사업의 시행방법	•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함	

○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

•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,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계획 참조

○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

1) 공공보행통로 결정 조서

구 분	계 획	비 고
공공보행 통로	•위치 : 구락로43번길(2단지 내) •폭원 및 연장 : B=6m, L=42.5m •내용 : 공공보행통로구간은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하고,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[지상권자(구청장) / 존속기간(영구)]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하고,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,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	
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	-	증) 38,171.2	38,171.2	

○ 결정사유서

구분	위 치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	•지구단위단위계획구역 신설 - A=38,171.2㎡	•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2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

○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총 계		38,171.2	-	38,171.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8,171.2	감) 38,171.2	-	-	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8,171.2	38,171.2	100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-	수영구 수영동 479-1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38,171.2	•재개발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변경

○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372	20	집산도 로	138	수영동 496-9	수영동 498-9	일반도 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
변경	중로	1	372	20	집산도 로	201	수영동 496-9	수영동 498-7	일반도 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노선연장
신설	중로	1	34	20	집산도 로	102	수영동 483-13	수영동 482-13	일반도 로	-	-	
기정	중로	2	551	15~18	국지도 로	590	수영동 494-10	망미동 208-1	일반도 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
변경	중로	2	551	15~23	국지도 로	587	수영동 494-10	망미동 208-1	일반도 로	-	부고 제2023-333호 (23.10.11)	노선험곽 및 축소
신설	중로	2	557	15	국지도 로	76	망미동 250-13	망미동 250-10	일반도 로	-	-	
신설	소로	1	30	10~11	국지도 로	552	수영동 500-4	수영동 477-5	일반도 로	-	-	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신설, 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372호선	중로1-372호선	•노선 연장 - B= 20m - L= 138m → 201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차량통행의 개선을 위해 기 결정된 노선을 연장
-	중로1-34호선	•노선 신설 - B= 20m - L= 102m	•중로1-374호선과 연계한 도로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 신설
중로2-551호선	중로2-551호선	•노선 확폭 및 노선 축소 - B= 15~18m → 15~23m - L= 590m → 587m	•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선 확폭 및 노선 축소
-	중로2-557호선	•노선 신설 - B= 15m - L= 76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위해 노선 신설
-	소로1-30호선	•노선 신설 - B= 10~11m - L= 552m	•대상지와 주변지역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위해 노선 신설

2)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주차장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-	증) 1,356.0	1,356.0	-	

■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-	주차장	•신설 - A=1,356.0㎡	•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

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 치	면적(㎡)	
신설	합계	38,171.2	-	-	38,171.2	
	I	15,270.0	1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15,270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II	14,476.0	1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14,476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-	1,356.0	-	수영동 493-42번지 일원	1,356.0	주차장
	-	7,069.2	-	-	7,069.2	도로

○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신설	I-1	수영동 482-1번지 일원	용도	지정용도	•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		불허용도	•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폐율		•50%이하
			용적률		•282%이하
			높이		•92m이하

II-1	수영동 489-23번지 일원	용도	지정용도	•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용도	•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50%이하
		용적률		•257%이하
		높이		•92m이하

■ 용적률 완화기준

용적률 완화기준 적용	※ 「2030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, 2019.12.」상 기준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				
	•기준용적률 : 240% (주거정비구역)				
	구 분	평가기준 점수	⇒	평가기준배점	토지이용
	수영2구역	66점		50~80점 미만	주거정비
					기준용적률

•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: 36.0%
1) 공공시설부지제공 인센티브 : 20.0%(최대 20% 적용)
→ 1.5×(3,620.2㎡÷29,746.0㎡)×200% = 36.5%
2)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: 5%
→ 5% (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 50% 이상)
3)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인센티브 : 5%
4)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센티브 : 6%

•허용용적률 산정
- 허용용적률 : 240% + 20% + 5% + 5% + 6% = 276%
•계획용적률 : 270% 이하(공동주택용지(Ⅰ-1, Ⅱ-1)의 전체 용적률은 270% 이하)

○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1) 공공보행통로 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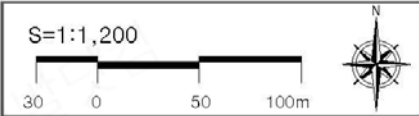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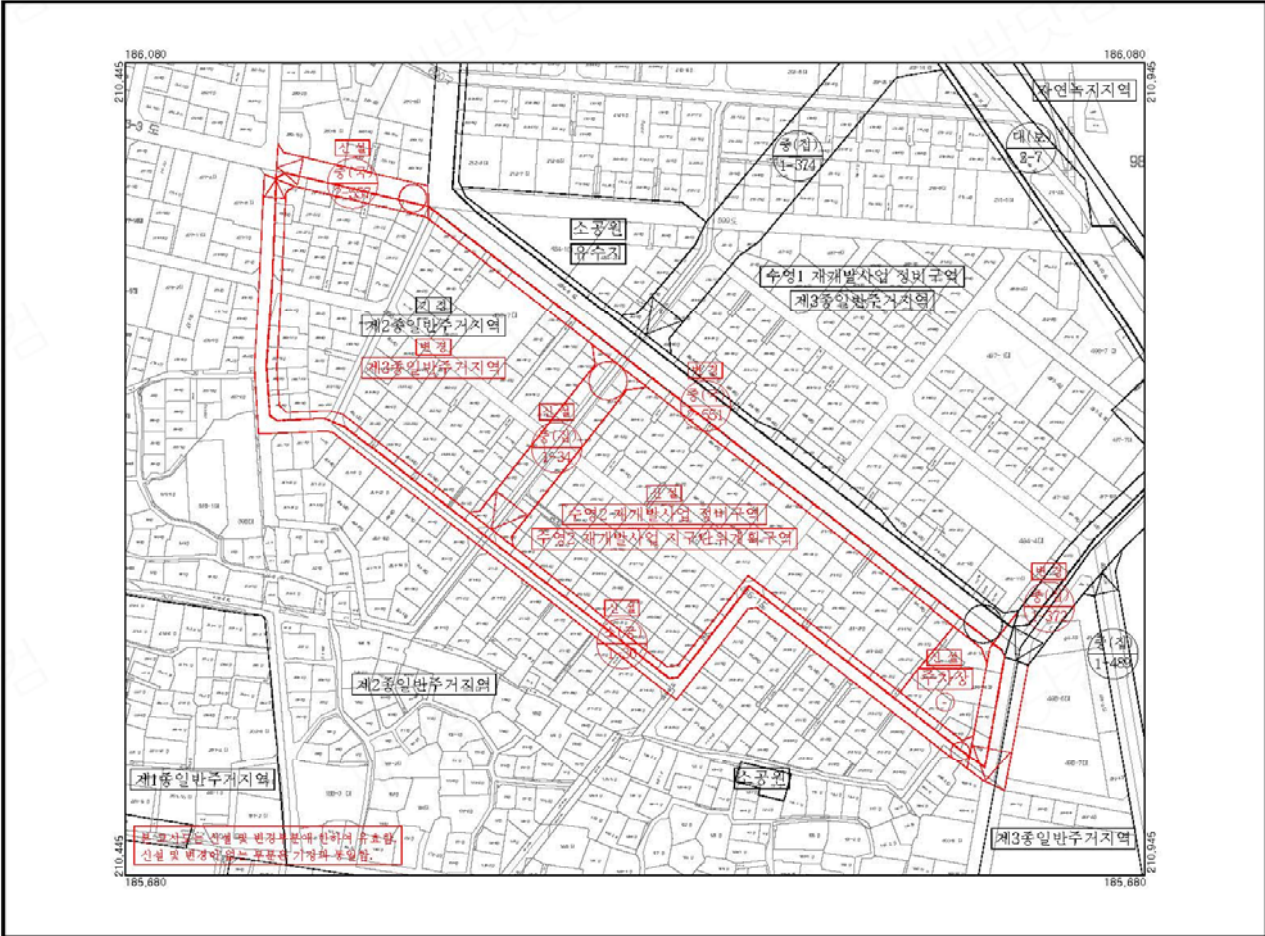
구 분	계 획	비 고
공공보행 통로	•위치 : 구락로43번길(2단지 내) •폭원 및 연장 : B=6m, L=42.5m •내용 : 공공보행통로구간은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하고,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[지상권자(구청장) / 존속기간(영구)]을 설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담보하고,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시,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	

IV. 관계도면: 생략(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, 수영구 건축과 비치)

- 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“<http://www.eum.go.kr>”)에서 열람 가능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- 정 비 구 역(신설)
- 도시계획시설(기정)
- 도시계획시설(신설, 변경)
- 용도지역선(기정)
- 용도지역선(변경)
- 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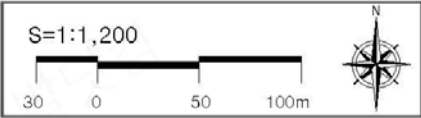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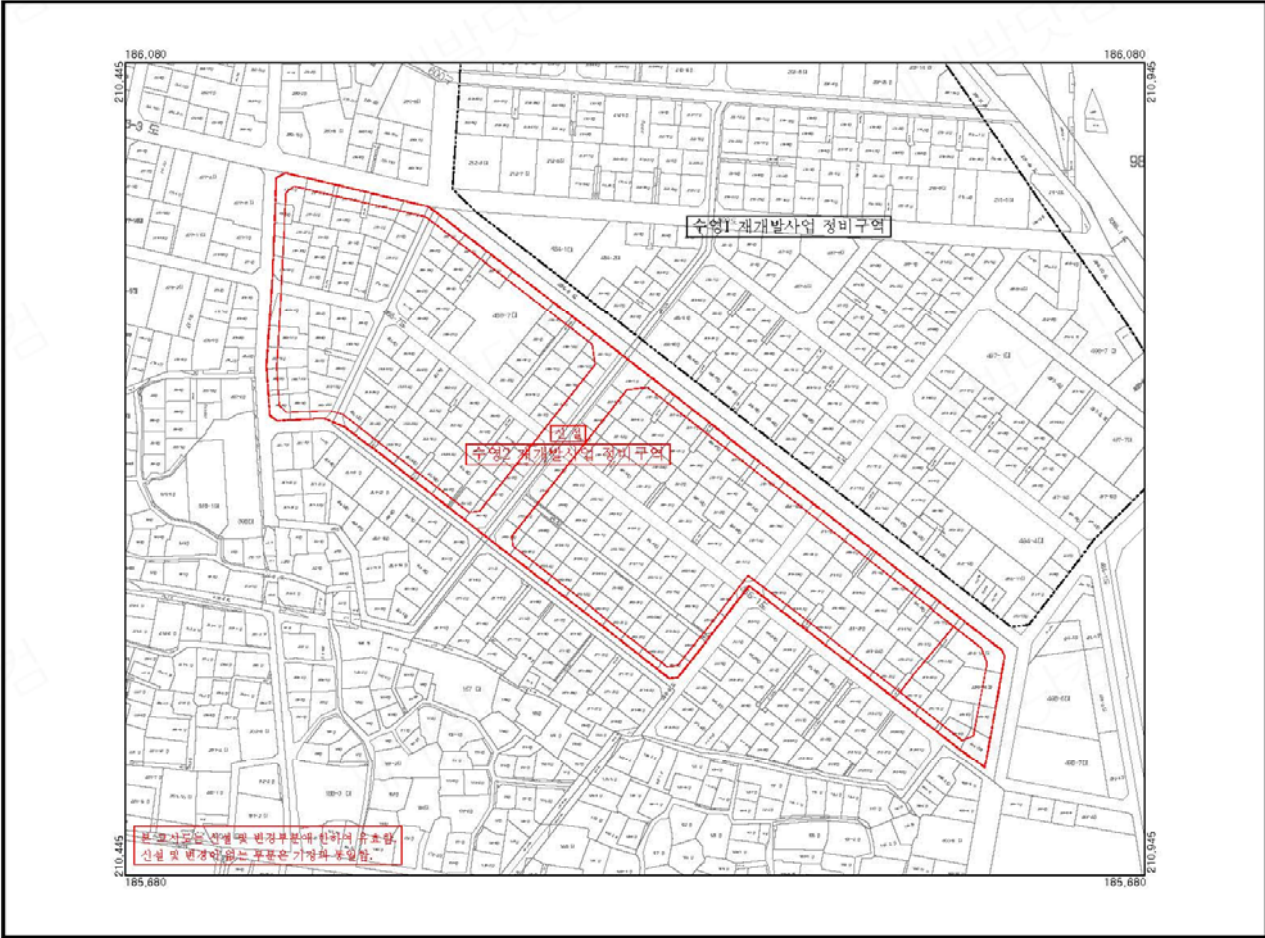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- 정비구역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정 비 구 역(신설)

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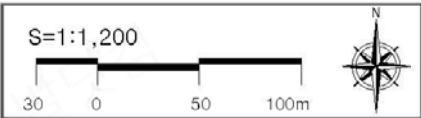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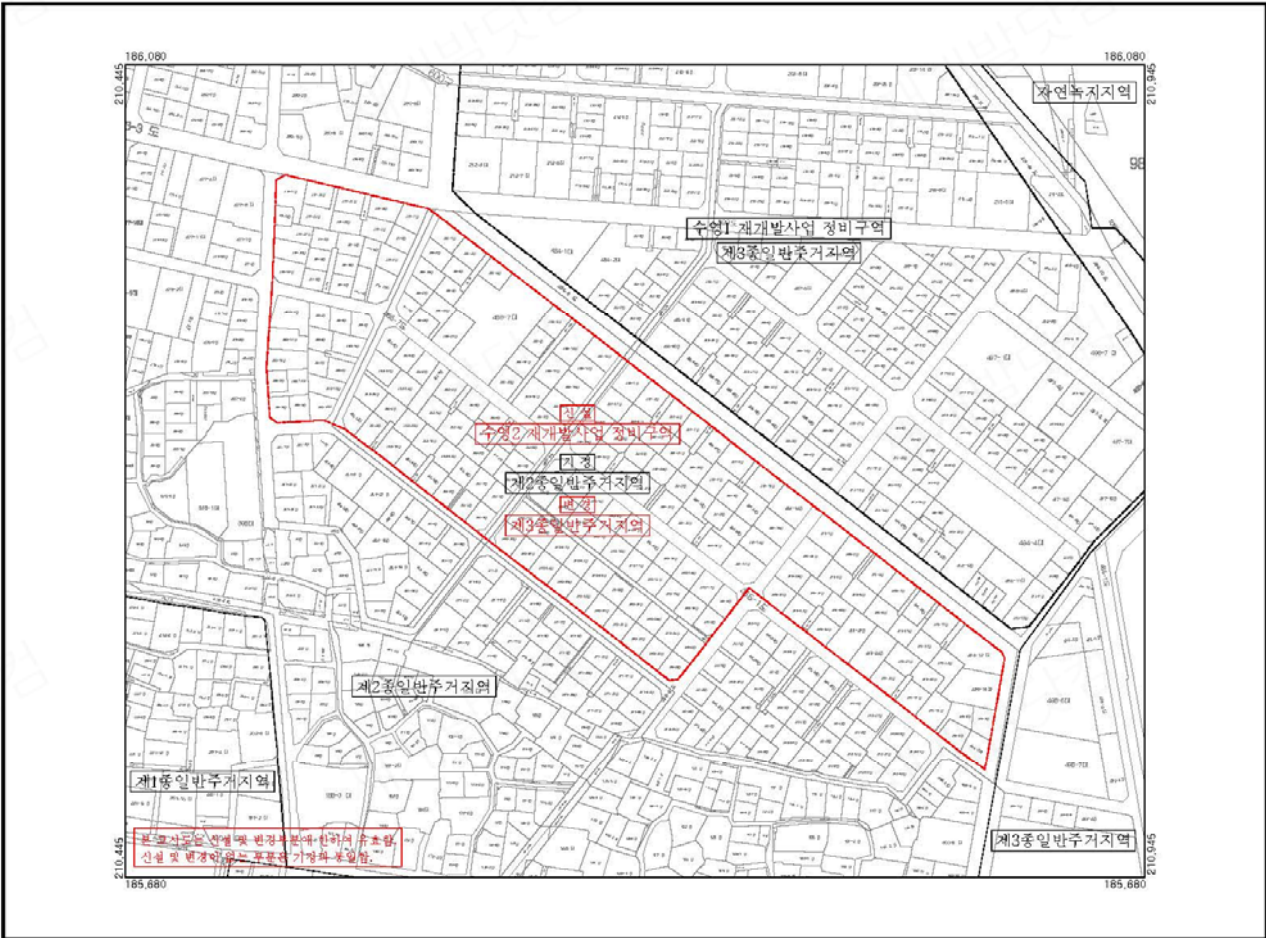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정 비 구 역(신설)

용도지역선(기정)

용도지역선(변경)

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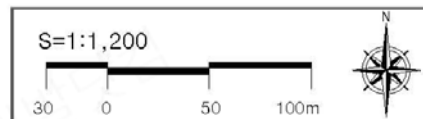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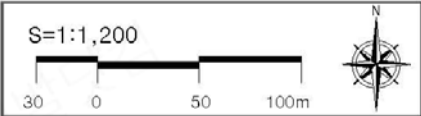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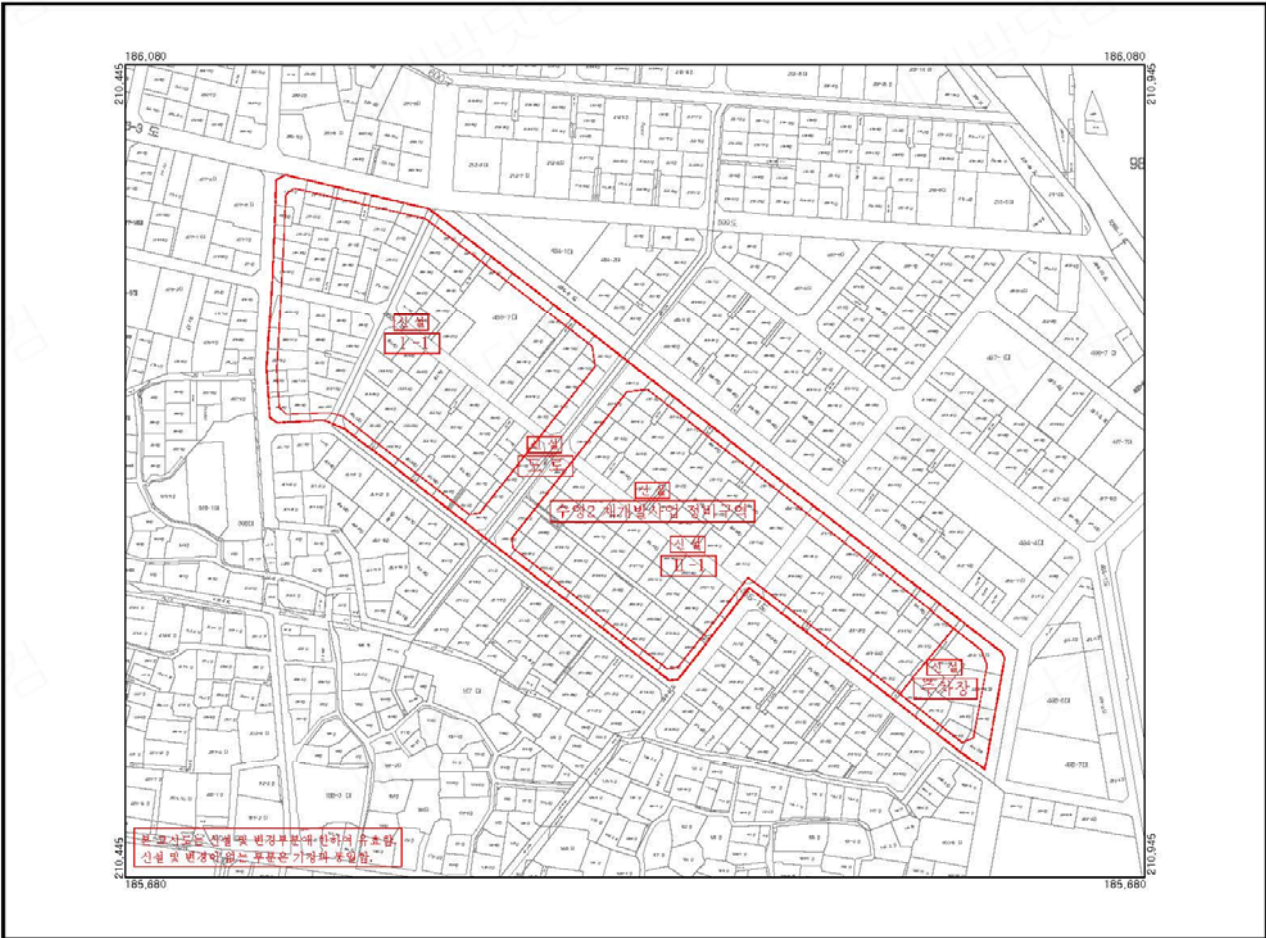
도면번호 : 01

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례 □

정비구역(신설)

가구 및 획지 계획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청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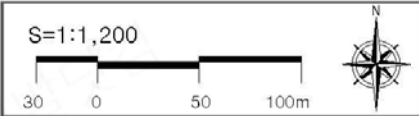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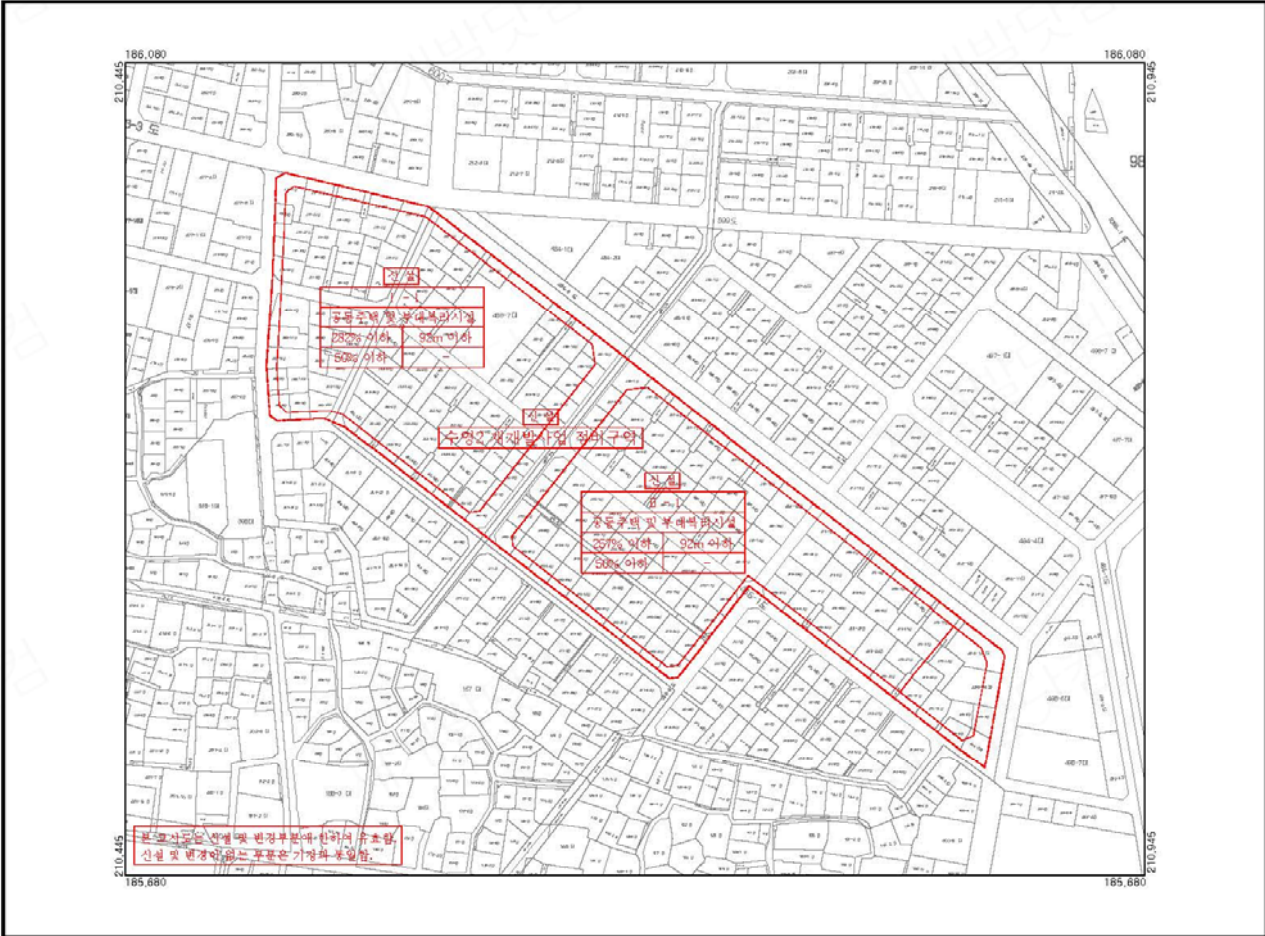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인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정비구역(신설)

가구 및 획지 계획선

지 적 선

가구 및 획지
주 용 도
용적률(이하)
높이(이하)
건폐율(이하)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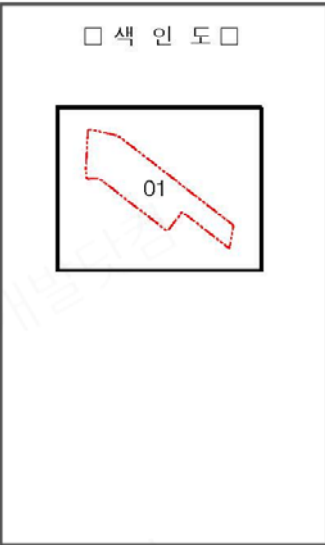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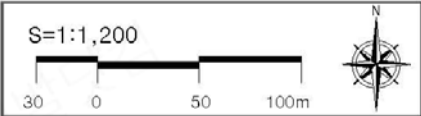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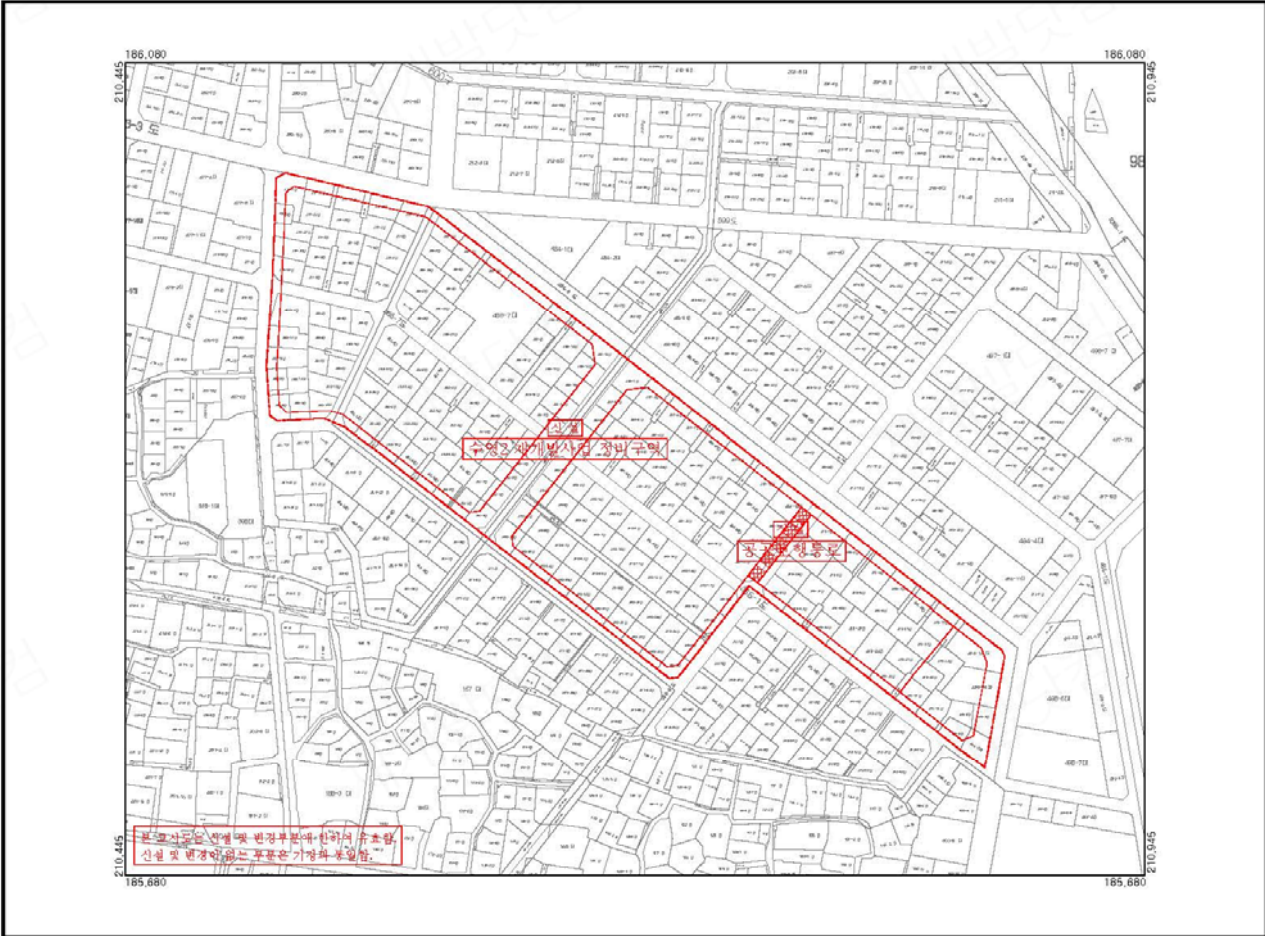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

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정 비 구 역(신설)

가 구 및 획 지 계 획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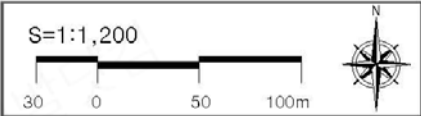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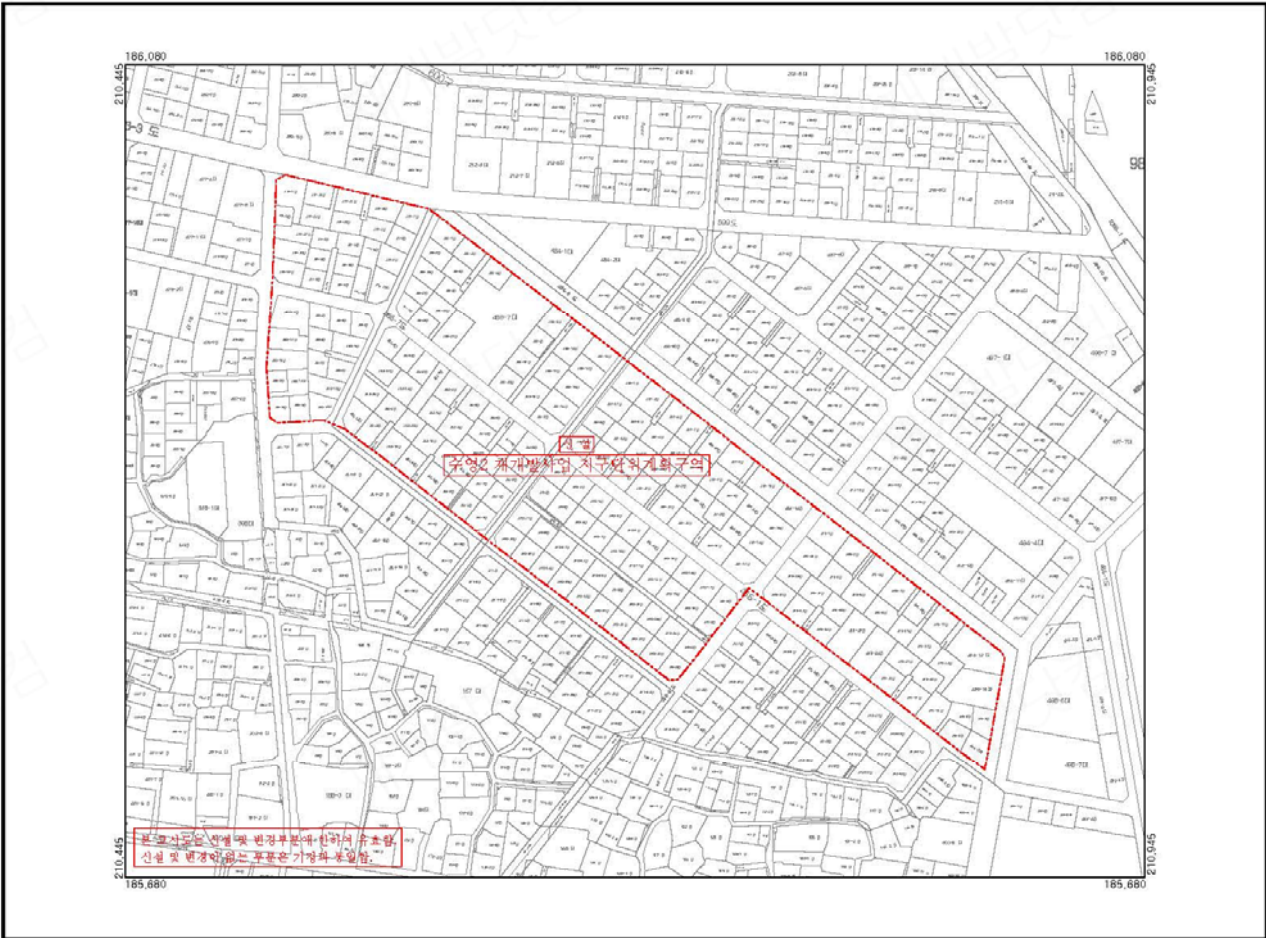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
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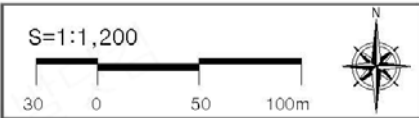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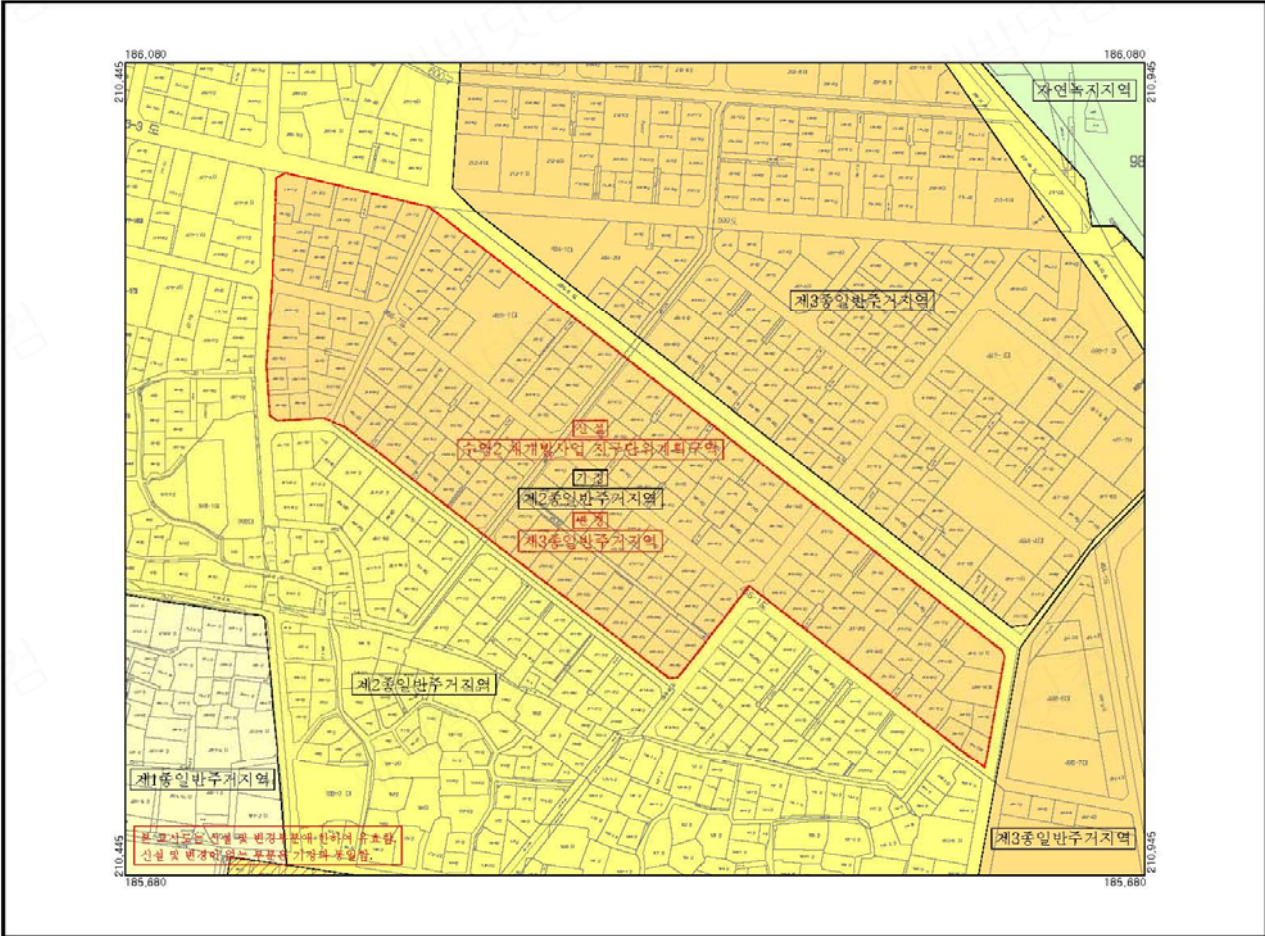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용도지역·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
용도지역선(기정)

용도지역선(변경)

제1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3종일반주거지역

준주거지역

자연녹지지역

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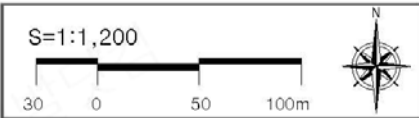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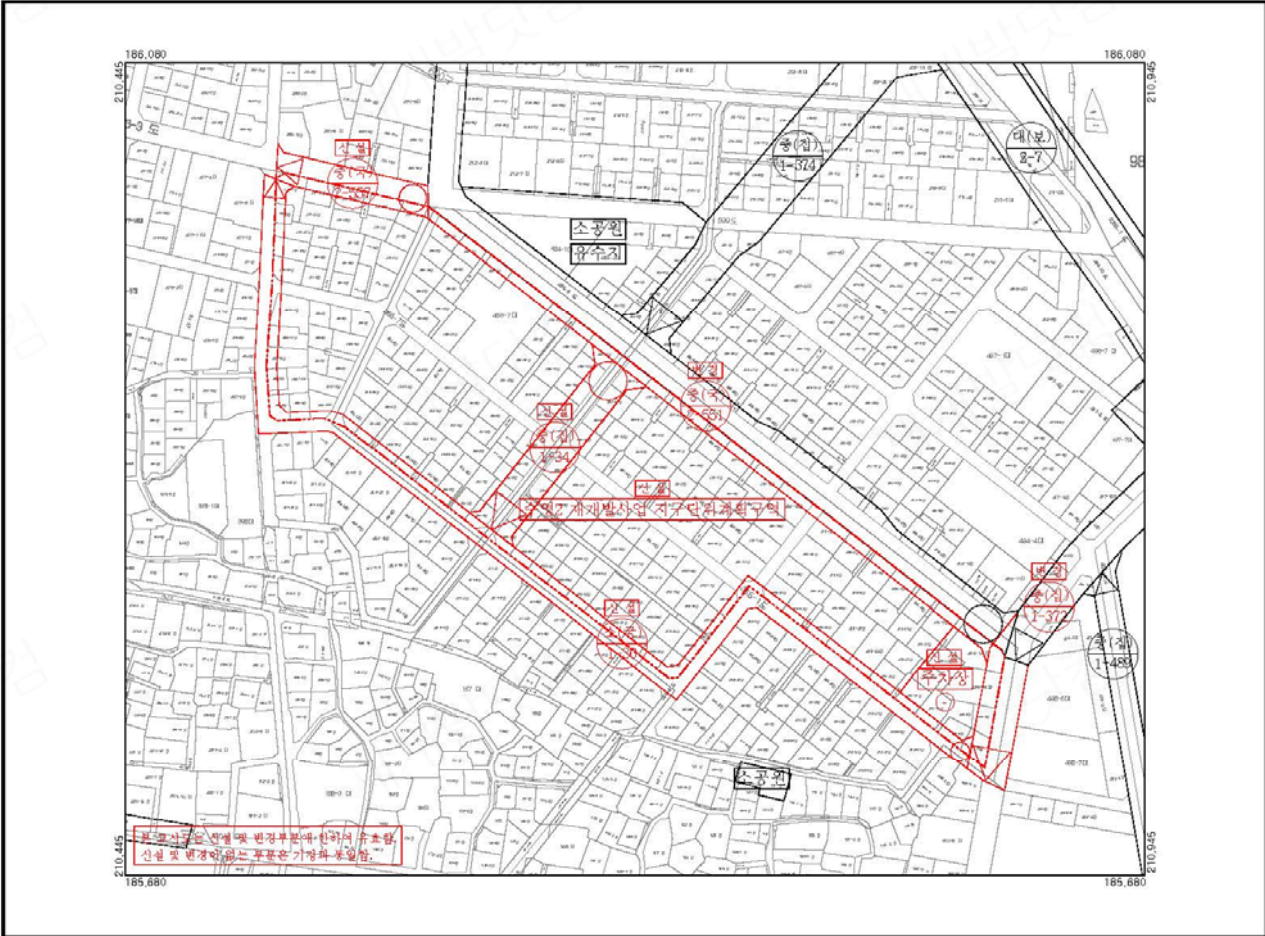
□ 색 인 도 □

01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
도시계획시설(기정)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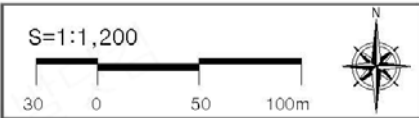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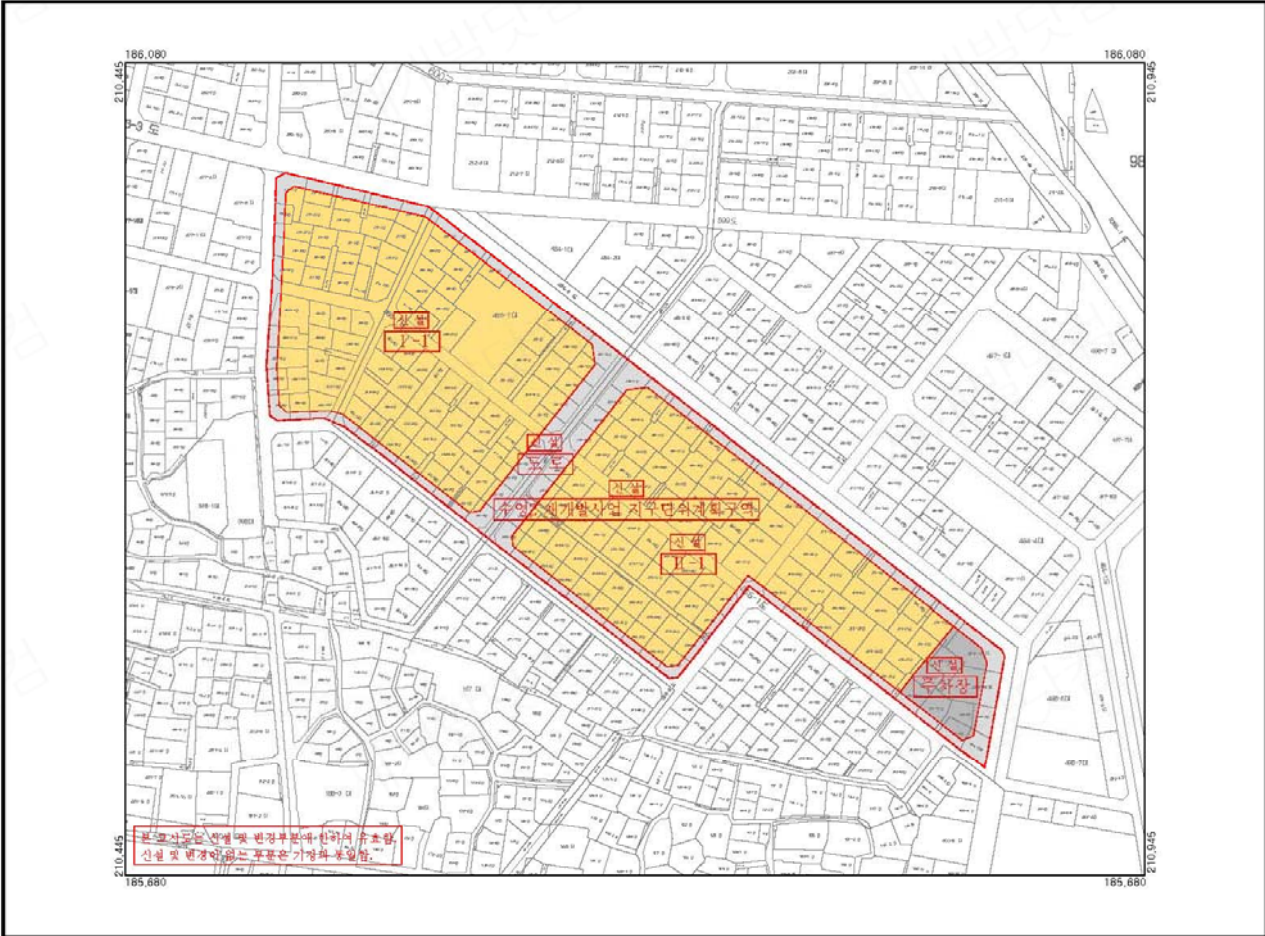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
가구 및 획지 계획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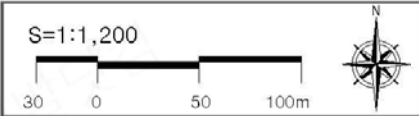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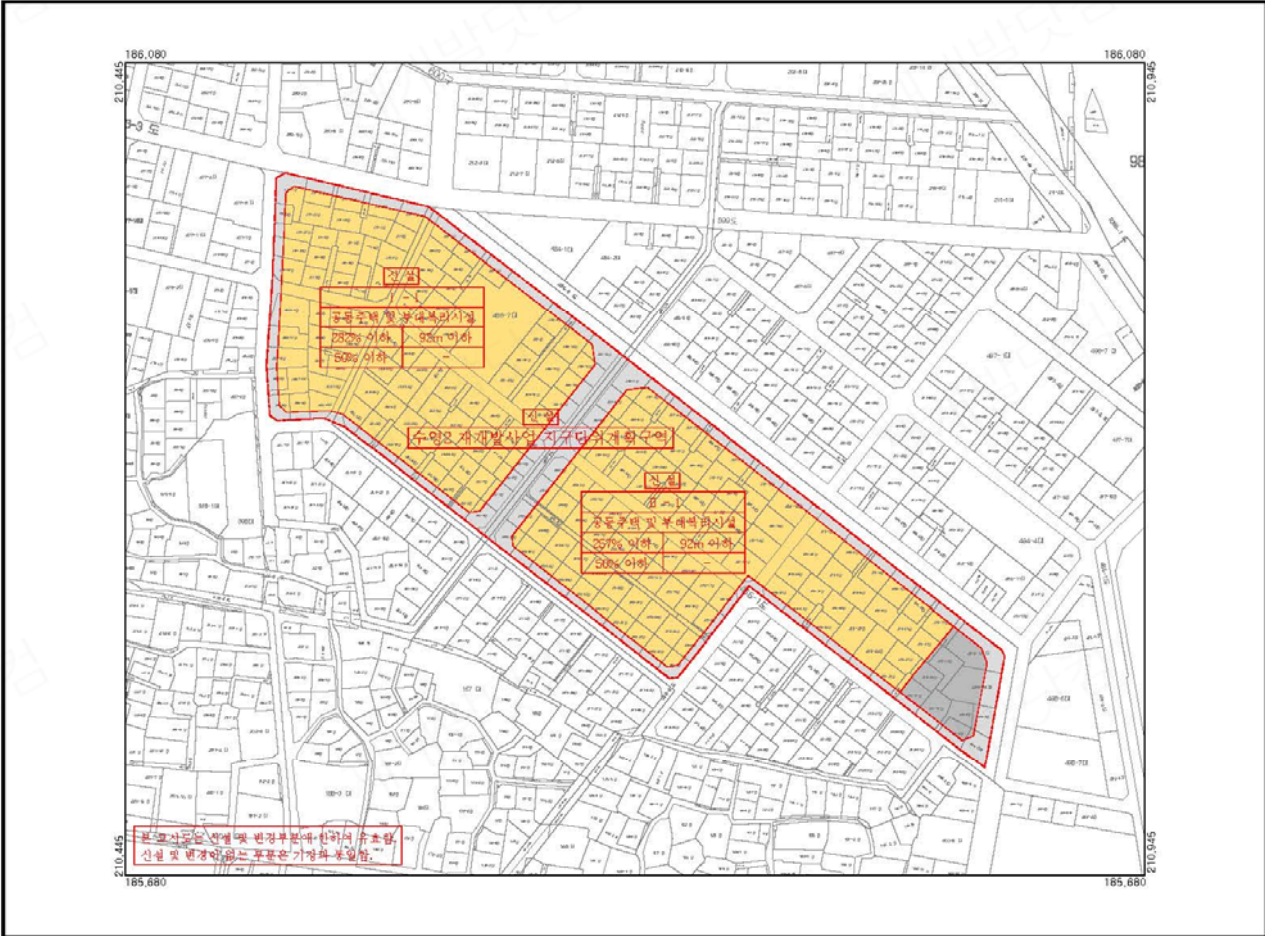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
가구 및 획지 계획선

공동주택

주 차 장

도 로

지 적 선

가구 및 획지	
주 용 도	
용적률(이하)	높이(이하)
건폐율(이하)	-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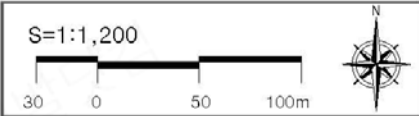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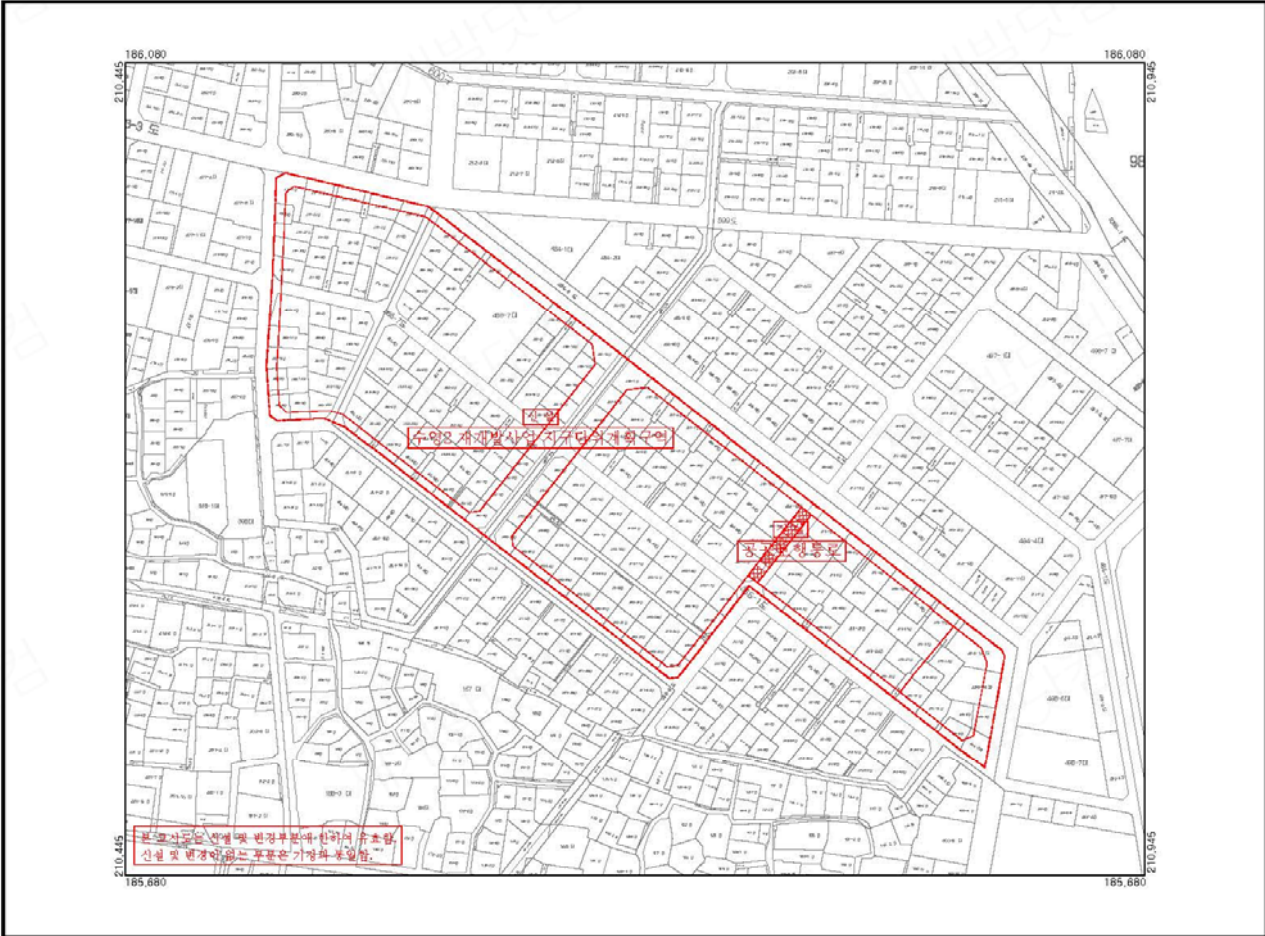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수영2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

-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-

도면번호 : 01



□ 범 레 □

- 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
- 가구 및 획지 계획선
- 공공보행통로
- 지 적 선

지정권자 : 부산광역시장
지정일자 : 2026년 7월 29일
고시년도 : 2026년 7월 29일
고시번호 :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2호
작성년월일 : 2026년 7월 29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

□ 색 인 도 □

01